

## ◎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 - 61호

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1일  
경북지방우정청장

### 「별정우체국 폐국」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

#### 1. 추진 내용

별정우체국법 제3조(별정우체국 지정 등)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

#### 2. 추진 대상국

| 총괄국명 | 폐국 관서명 | 관서급 | 위 치                  | 폐국일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안동   | 안동와룡   | 별정국 |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33 (태리) | 2025. 6. 2.(월) |

#### 3. 의견제출

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대구시 동구 동춘로1(입석동)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
- 전 화 : 053-940-1412, 팩스 : 050-5005-1951
- 이메일 : keh0716@korea.kr

#### 4. 기타사항

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(☎ 053-940-14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